

信用狀 詐欺去來와 書類 偽造

김 영 구* · 이 재 승**

Documents Forgery and Fraud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Young-Koo Kim · Jae-Sung Lee

< 目 次 >	
Abstract	
I. 序 論	III. 詐欺的 去來形態
1. 研究目的	1. 運送書類의 偽造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2. 信用狀詐欺의 形態
II. 信用狀 去來原則	3. 信用狀詐欺의 適用原則
1. 獨立, 抽象性	IV. 詐欺的 거래의 새로운 可能性
2. 書類에 의한 去來	V. 結 論
3. 嚴密一致	참고문헌

Abstract

As for the bank's discretionary power to deviate from absolute strictness in the terms of compliance of the letter of credit, the solution does not seem to lie in dogmatic adherence to one of the opposing principles.

The principle – the bank's duty to accept or pay whenever the documents seem to comply on their face, regardless of underlying fraud – the bank is under a duty to withhold payment at any time the customer duties of the forgery or fraud of the underlying contracts – is inoperative.

In order to avoid the unnecessary polarization of decisions,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merits of the injunctive remedy.

It is to be hoped that banks who advertise themselves as experts and who propose to advise their clients o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will be held to their promise.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부교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It is believed that the relaxation of the fraud rule would be of benefit not only to importers who utilize the documentary credit system, but also to the banks.

An injunction granted in instances of the type of fraud may on occasion save a bank from sustaining a los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documents of title constitute the bank's security to its own client.

I. 序論

1. 研究目的

國際貿易에 있어서 賣渡人の 物品引導義務에 대해서 買受人은 代金支給義務를 이행함으로서 원활한 國際去來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買受人の 代金支給義務의 이행은 貿易契約에 있어서 代金支給條件을 충족시킴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貿易契約에 있어서 代金支給方法은 대부분의 경우 信用狀決濟方式과 推尋決濟方式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決濟方式들은 國際去來에 있어서 賣渡人の 信用危險을減少시켜 주고 買受人에게는 貿易契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代金支給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의 관점에서 信用狀決濟方式이 보다 더 중요한 經濟的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信用狀決濟方式이 貿易契約과는 獨立, 抽象的契約으로서 書類에 의한 去來原則을 賣渡人이 오히려 이를 詐欺的으로 사용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信用狀去來와 관련한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一般的으로 受益者에 의한 詐欺와 運送業者에 의한 詐欺인데 受益者가 賣渡人과 運送業者의 地位에 있으면서 物品運送 중에 詐欺를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契約物品과 運送手段이 代金請求를 위하여 銀行에 제시하는 書類上에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假說下에 본 연구는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가능한 書類偽造에 의한 詐欺的 去來形態를 判例를 중심으로 分析하고 이와 관련되는 諸規定을 比較検討하여 信用狀統一規則의 未備點을 補完함으로서 賣渡人の 詐欺的 去來行爲를 制度的으로 防止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본 연구는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賣渡人과 發行銀行의 法律的關係를 중심으로一般的去來原則과 賣渡人の 詐欺的 去來形態 判例를 통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信用狀統一規則에서 나타나는 賣渡人の 詐欺的 去來行爲와 관련되는 各條件를 檢討하여 그 未備點을 導出하여 賣渡人の 書類偽造에 의한 詐欺的 去來에 대한 對策을 講究하고자 한다.

研究의 方法은 文獻的 調査方法과 判例를 分析하는 實證的方法에 의할 것이다. 判例에 의한 實證的方法은 法學的 接近 보다는 가능한 많은 判例를入手하여 信用狀去來에서 賣渡人の 書類偽造에 의한 詐欺

의 去來를 防止하는 貿易商務論의 接近에 치중할 것이다.

II. 信用狀 去來原則

1. 獨立, 抽象性

貿易契約은 賣渡人과 買受人간의 合意이며 이러한 合意下에 信用狀에 의한 代金支給方法을 規定하는 것은 發行銀行과 賣渡人 그리고 信用狀과의 관連當事者들 과의 契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合意는 區別되며 相互獨立的인 것이다.

契約條件은 明示的으로 사용된 表現에 따라 判斷되어야 하지만一般的으로 이 두 形態의 契約은 이미 오래전부터 判例에 의해 區別되고 있는데 즉, 信用狀은 賣渡人과 買受人간의 契約의 一部가 아니며 전적으로 銀行과 賣渡人과의 個別의 獨立된 契約이다.¹⁾ 또한 信用狀을 發行하는 銀行은 賣渡人과 買受人간에存在하는 契約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²⁾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信用狀의 獨立性은 信用狀 統一規則 第3條에서도 信用狀去來가 賣買契約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拘束도 받지 않는다고 規定해 두고 있다.

信用狀統一規則 第4條에서는 信用狀去來는 物品의 去來가 아니고 書類去來라는 契約의 抽象性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므로 貿易契約과 信用狀의 關聯된 문제에 있어서 銀行은 實質的으로 存在하는 物品을 확인하기 위해 提示하는 書類에 의해서 獨立 抽象的으로 判斷하는 것이다.

2. 書類에 의한 去來

信用狀의 抽象性과 關聯된 事項으로 發行銀行이 賣買當事者의 契約內容과 關聯하여 提示된 書類가 信用狀條件과의 一致에도 불구하고 代金支給을 拒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CIF契約과 비교해서 說明될 수 있는데 만약 賣渡人이 CIF契約下에서 買受人에게 書類를 提示해야 한다면 買受人은 두개의 選擇權을 가질 수 있다. 즉, 買受人은 提示된 書類에 대해 代金支給에 응하거나 代金支給拒絕의 理由를 提示하는 것이다.³⁾

만약 買受人이 書類의 偽造나 物品이 契約과 相異하다는 證據를 提示할 수 있다면 賣渡人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나 賣渡人의 詐欺的去來인 경우 충분히 救濟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買受人에 의한 代金支給拒绝은 信用狀去來에서는 現實的으로 不可能 하므로 銀行에 의해서 書類에 의한 去來가 確立된 것이다.

여기에서 書類에 의한 去來라는 것은 信用狀發行依賴人에게 문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銀行은 獨自의 判斷에 따라 그 書類의 文面上의 一致性에 의한 去來를 하는 것이다.⁴⁾

1) S. L. Jones & Co. v. Bord, 191 Cal. 551, 217 Pac. 725, 727(1923)

2) Imbrie v. D. Nagase & Co., App. Div. 380, 383, 187 N. Y. Supp. 692, 695(1921)

3) Herman N. Finkelstei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 of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pp. 224 - 225.

3. 嚴密一致

信用狀의 基本原則이 書類에 의한 去來이므로 銀行은 提出된 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嚴密하게 一致하는지를 點檢하여 信用狀의 條件과 文面上一致함이 判明되면 支給을 한다는 原則이다.

銀行은 自行에 提出된 書類 또는 換어음을 주의깊게 點檢할 義務가 있으며 中요한 것은 支給用으로 換어음을 함께 提出된 書類가 信用狀條件과 반드시 一致하여야 하며 만일 不一致 할 경우 銀行은 信用狀의 約定을 移行할 義務가 없다. 즉, 提出된 書類와 信用狀條件과의 一致가 銀行 支給義務의 前提條件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原則을 嚴密一致의 原則이라 하며 信用狀去來의 核心이라 할 수 있다. 이 原則은 商業信用狀과 保證信用狀에 다같이 適用할 수 있는데 書類의 첫번째 提示者에 適用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書類의 첫번째 提示者인 受益者가 推尋을 하거나 書類를 提示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뿐 아니라 信用狀의 有效期間내에 書類上의 不一致原因을 除去해야 할 義務가 있기 때문이다.⁵⁾

信用狀統一規則 第15條에서도 銀行은 모든 書類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고 신용장의 조건에 文面上一致하는가를 확인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文面上一致라는 것을 書類에 대한 法律的 analysis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나타나 있는 그대로一致되어 있다면 提示된 그대로 引受, 買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原則에 따라서 銀行은 書類가 信用狀의 條件과 嚴密하게 一致하는지의 여부를相當한 주의를 기울여 點檢할 義務가 있다는 嚴密一致의 原則을 法院이 고수해 왔다. 그러나 法院은 이 嚴密一致의 原則을 緩和하여 書類가 信用狀條件과 상당하게 一致하면 銀行은 이를 受理할 수 있다는 判決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受益者는 위와같은 理由로相當一致의 原則을 주장할 수 없으며 受益者는 어떠한 경우에도 銀行間에 존재하는 契約關係나 開設依賴人과 發行銀行間에 存在하는 契約關係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銀行의 상당한 主義義務는 보다 엄격한 基準에 適用되어야 하나 嚴密一致의 原則과 信用狀去來 慣習間에는 다소의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III. 詐欺的 去來形態

1. 運送書類의 偽造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運送書類의 偽造에 의한 詐欺的去來는 FOB契約과 關聯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것은 보다 단순한 形態이고 주로 CIF契約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貿易契約條件이나 信用狀條件에서 物品의 船籍前에 國際檢查證機關으로 하여금 物品을 檢查하여 필요한 證明書를 發行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本船上에 物品의 船積이나 船荷證券의 發行등을 監督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나 보통 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物品의 檢查정도에 그치고 있다.⁶⁾

4) 韓住燮, 信用狀論, 東星社, 1984, p. 44.

5) Matti Kurkela, Letters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ceana Publications, 1985, p. 298.

6) F. M. VVentriss,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3, p. 142.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信用狀去來에서 運送書類의 常態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運送書類의 誤記를 포함하여 僞造船積書類나 僞造檢查證明書의 提供을 포함한 詐欺的去來가 가능한 것이다.⁷⁾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詐欺的去來行爲의 원인은 信用狀方式에 의한 代金濟方法의 증가, 複寫機械의 개발 그리고 信用狀去來를 취급하는 新規銀行에 있어서 信用狀去來의 專門家의 부족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國際商業會議所나 UNCITRAL 그리고 法院에서도 이러한 信用狀去來의 詐欺的去來에 대해서 當事者들을 保護할 수 있는 적절한 方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詐欺的去來에 대한 基本的原則은 오히려 明確하게 制度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銀行은 信用狀條件에 따라 文面上에 狀態의으로 一致하여 나타나는 書類을 引受하였을 경우에 제시된 書類가 僞造되었거나 어떤 誤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原則上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⁸⁾

그러므로 確認銀行은 發行銀行으로부터 그러한 書類에 대해 狀況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있으며 發行銀行은 買受人으로부터 그러한 書類에 대해 支給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僞造되었거나 오기된 運送書類를 인수한 은행은 煥어음의 交付者가 첨부된 運送書類의 真偽性을 保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受取한 推尋銀行이나 買入銀行에 대해서 償還을 請求할 수 없는 것이다.

FOB나 CIF와 같은 貿易契約에서는一般的으로 物品의 監室은 買受人이 負擔하는 것이며 이러한 貿易慣習의 이면에는 銀行은 物品에 의한去來가 아닌 書類에 의한 거래의 慣習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銀行은 信用狀下에서 提供된 書類를合理的으로 檢討함으로서 買受人에 대한 銀行의 義務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書類確認義務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文面上 書類와 信用狀條件과의 一致 여부를 發行銀行과 確認銀行이 確認해야 할 權利나 義務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原則下에 信用狀은 銀行과 受益者와의 契約을 構成하고 있으며 이것은 當事者の 貿易契約에서의 契約의 관계와는 相互別個인 것이다.

이것을 根據로 한다면 買受人과 賣渡人 사이에 書類에 關聯한 僞造의 문제が 발생한다면 은행은 서류의 문면상 일치한다면 당사자의 계약에 관여해서는 않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買受人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즉, 買受人은 信用狀條件과 書類가 文面上 일치할 경우 物品이 契約과一致하지 않는 경우나 物品이 船籍도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銀行에 代金을 償還해야 하는 것이다.¹⁰⁾

의심할 여지없이 買受人은 提示된 서류가 文面上一致하지 않다면 書類를 引受해야 할 義務가 없지만 경험상으로 위조 혹은 誤記된 運送書類의 경우 詐欺를 행하는 當事者は 運送書類가 文面上 絶對的으로一致하도록 만들고 있다.

7) C. M. Schmithoff, Export Trade (7th ed.), Stevens & Sons Co., 1985, p 269.

8) Philip A. Feinberg Inc. v. Varig S. A., 363 N.Y. S. 2d 195(1974), affirming 370 N. Y. S. 2d 499(1975)

9) United Bank Limited v. Cambridge Sporting Goods Corp., 360 N. E. 2d 943(1976).

10) Gutteridge H. C. & Megrah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6th ed), Europa Publications Limited, 1979, p. 88.

2. 信用狀詐欺의 形態

1) Sztein v. J.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

信用狀 發行銀行이 契約物品인 剛毛에 대하여 取消不能信用狀을 開設하였는데 賣渡人이 剛毛 대신에 잡동사니를 포함한 나무상자를 船積하고 文面上一致하는 運送書類를入手하였다.

買受人이 賣渡人の 詐欺行爲를 알고 發行銀行에 대해 運送書類의 引受를 禁止시키기 위하여 支給停止處分申請을 하였다.

이에 대해 Shientag J. 判事는 賣渡人の 詐欺的去來行爲가 換어음과 運送書類가 提示되기 전에 銀行이 이를 認知했다면 信用狀下에서 銀行義務의 獨立性의 原則이 詐欺的賣渡人을 保護하기 위해서 適用되어서는 않된다고 判示함으로서 信用狀의 獨立, 抽象性의 原則에 대한例外로서 賣渡人の 書類偽造에 의한 詐欺的去來行爲를 인정하고 있다.

2) The American Accord Case¹¹⁾

12月 16日字에 發行된 船荷證券이 船舶代理店에 의해 信用狀上에 規程된 滿期日 이전에 船積履行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船荷證券의 發行日을 12月 15日字로 偽造變更 시켰으나 賣渡人은 이와 같은 船舶代理店의 詐欺的行爲를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Mocatta J. 判事는 Sztejn事件을 言及하면서 銀行은 書類가 偽造되었거나 賣渡人の 支給要請이 詐欺的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代金支給의 義務가 없다고 判示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院은 이事件의 詐欺行爲는 賣渡人에게 轉嫁할 수 없는 것으로 銀行은 書類를 거절할 權利가 없으며, 더욱이 銀行은 運送書類의 하나의 內容이 特定事實과 一致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文面上하는 運送書類를 拒絕할 수 있다고 判決했다. 즉, 不一致 그 自體가 詐欺行爲를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Etablissement Esefka International Anstalt v. Central Bank of Nigeria¹³⁾

銀行이 偽造된 運送書類와 誤記된 原產地證明書를 引受하고 信用狀金額의 相當部門을 支給했다.

그후 買受人에 의해 賣渡人の 詐欺行爲임을 나타내는 明白한 證據가 提示되었는데 즉, 物品이 船籍되었을 것으로 推測되는 船舶이 契約物品인 시멘트를 船籍하기 위해서 문제의 港口에 寄港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銀行은 즉시 나머지 金額의 支給을 拒絕하고 賣渡人에 대해 訴訟의 제기와 함께 기지급한 金額에 대해서 抵當權의 行사를 위한 준비를 했다.

이에 대해 Denning M.R. 判事는 일반적으로 詐欺問題와 관련해서 書類는 매 分割船積시마다 정확하고 有效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條件이 偽造 혹은 詐欺的 書類가 提示됨으로서 每 分割船積分에 대해서만 責任을 질 수 있다고 判示했다.¹⁴⁾

11) [1979] 2 Lloyd's Rep. 267.

12) ibid. p. 276.

13) [1979] 1 Lloyd's Rep. 445.

14) Ibid. p. 447.

이와 같은 判示內容은 銀行이 문제의 偽造書類에 대해 기지급한 金額에 관련해서는 反對訴訟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買受人이 銀行의 代金支給을 중지시키기 위해 支給停止處分을 申請한다면 法院은 有效한 證據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信用狀詐欺의 適用原則

信用狀의 詐欺的 去來는 制限된 범위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첫째, 이러한 原則은 書類上의 物品의 明細와 實質的 內容 사이의 주장된 不一致가 詐欺的 去來임을 意味하고 명백한 詐欺가 아닌 賣渡人에 대해서 物品의 缺陷을 주장할 수 없다는 判示가 있다.

둘째, 詐欺的 去來는 立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商業信用狀이 아닌 保證信用狀의 경우 支給停止處分이 受益者가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行動하지 않고 있다고 判斷된 경우에만 詐欺의 어음 발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判示한바 있다.¹⁵⁾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Esefka case의 경우 처럼 信用狀去來에서 詐欺의 어음의 發行을 立證하기가 어려우며 게다가 대부분의 信用狀去來에서는 買受人이 士氣를 立證할 수 있는 證據를入手하기 전에 代金支給이 이루어져 信用狀의 現金化가 달성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셋째, 詐欺的 去來는 그러한 行爲를 한 當事者에 대해서만 效果的으로 提起될 수 있는 것이다. 信用狀下에서 發行된 어음의 善意의 所持人은 賣渡人の 詐欺的 去來를 理由로 해서 支給停止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原則은 위에서 言及한 Sztejn Case에서도 適用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Megarry J. in Discount Records Ltd. v. Barclays Bank Ltd.¹⁶⁾ 事件에서 適用되었다.

같은 이유로, 위에서 言及한 The American Accord Case에서 船舶代理店과 같은 第3者에 의해 행해지는 詐欺의 去來를 理由로 해서 受益者の 代金支給請求에 대해 支給停止處分이 適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制限들은 買受人이 書類에 대해 偽造의 嫌疑가 있다고 믿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이에 대한 異意를 提起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信用狀下에서 偽造書類를 提示하는 第3者가 實質的으로 詐欺를 행하는 當事者보다 더 有利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Megarry J.는 Discount Records Case에서 善意의 所持人과 같은 第3者는 書類와 관련된 紛爭의 주체가 되어서는 않되며 換어음의 支給請求가 許容되어야 한다고 判示했다.

이것은 換어음法(Bills of Exchange Act 1882)38條에 善意의 所持人の 支給請求權을 許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¹⁷⁾

15) Ibid. p. 447.

16) [1975] 1 W. L. R. 315.

17) Bills of Exchange Act, s. 17(2)

IV. 詐欺的 去來의 새로운 可能性

信用狀統一規則 第22條 C項은 信用狀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銀行은 寫眞複寫시스템에 의해 作成된 것, 自動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작성된 것 또는 複寫紙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書類를 原本으로 수리하도록 規定하고 다만, 原本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편요한 경우에 그러한 書類가 認定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條項은 運送書類가 原本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原本認證이 되어 있다면 寫本도 銀行이 引受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혁명적 慣行의 도입은 偽造書類에 의한 詐欺的 去來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미 행해지고 있을지도 모를 詐欺的 去來의 새로운 萬能性을 예로 들면, FOB條件으로 物品을 購買한 詐欺的 買受人은 그가 僱船하고 物品을 船積한 다음 세通의 船荷證券 原本을 發給받을 수 있다. 다시 詐欺的 買受人은 船荷證券 寫本 여섯通을 만든후 세개의 다른나라의 다른 買受人에게 세번에 걸쳐서 동일 物品을 賣渡할 수 있다. 물론 代金支給條件은 각기 다른 銀行의 確認信用狀에 의한 一覽拂 어음 條件이다.¹⁸⁾

그러므로 22條 C項의 規定은 새로운 詐欺的 去來의 萬能性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船荷證券을 포함한 運送書類의 寫本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V. 結論

結論의으로 信用狀 去來에서 獨立性과 嚴密一致의 適用에 있어서 銀行의 自由裁量權에 관련된 문제는 反對의 原則, 어느 하나를 집착할 수 없을것 같다. 즉, 詐欺的 去來에도 北구하고 書類가 文面上一致하다면 銀行은 이를 引受, 支給해야 할 義務가 있다는 原則은 대부분의 紛爭事件에서 본바와 같이 노력이 없으며 銀行 顧客이 該當 去來에서 書類의 偽造 혹은 詐欺的 去來임을 銀行에 통지할 때 마다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효력이 없는 것 같다.

또한 詐欺的 去來에 대한 銀行의 注意義務도 再論의 여지가 있으며 銀行이 스스로 信用狀 去來에 있어서 專門家로서 그의 顧客에게 認識이 되어 있다면 信用狀 去來에서 注意義務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顧客에 대한 約束이기도 하다.

그리고 詐欺的 去來의 原則을 緩和하는 것은 信用狀 制度를 이용하는 買受人은 물론 銀行에도 有利한 것이다. 또한 詐欺的 去來에 適用하는 支給停止處分은 銀行의 損害를 救濟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運送書類와 같은 權利證書가 顧客에 대한 擔保權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8) F. M. Ventris, First Supplement to the second edition of Bankers' Documentra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5, p. 45.

참고문현

- 1) 裴勇元, 信用狀去來에 있어서의 書類點檢義務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6.
- 2) 許柱燮, 信用狀論, 東星社, 1984.
- 3) Day D. M.,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Butterworths, 1981.
- 4) Finkelstein Herman 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 5) Guests A. G.,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Ltd, 1981.
- 6) Gutteridge H. C. & Megrah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Europa Publication Ltd, 1979.
- 7)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The Ronald Press, 1974.
- 8) Kozolchyk Borris,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Co., 1976.
- 9) Lowe R., Commercial Law, Sweet & Maxwell, 1983.
- 10) Lusk H. F., Business Law Principles and Cases, Irwin, 1978.
- 11) Matti Kurkela, Letters of Credit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Oceana Publications, 1985.
- 12) Oppenheim P. K., International Banking, ABA, 1978.
- 13) Reeday T. G., The Law Relating to Banking, Butterworths, 1980.
- 14) Sassoon D. M., CIF and FOB Contracts, Stevens & Sons, 1975.
- 15) Schmitthoff C.M., Mercantile Law, Stevens & Sons, 1984.
- 16) ———, Commercial Law in a Changing Economic Climate, Sweet & Maxwell, 1981.
- 17) ———, Export Trade, Stevens & Sons, 1981. Ventris F. 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1983.
- 18) ———, First supplement to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1985.
- 19) Ellinger E. P., Standby Letter of Credit, International Business Law, 1978.
- 20) ———, Fraud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Journal of Business Law, 1981.
- 21) Harfield Henry, The Emerging Law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Ariz.L. Rev., 1982.
- 22) Kozolchyk B., The Legal Nature of the Irrevocabl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65.

